

과태료 부과기준 (제8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과태료 금액
1) 보험급여 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2) 보험급여 비용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비용의 100분의 40
3) 보험급여 비용이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비용의 100분의 60
4) 보험급여 비용이 600만원	보험급여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5) 보험급여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

비고

1. 과태료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과태료 금액을 계산할 때에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나. 법 제1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사용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4항제1호	30	60	100
2) 사용자, 직장가입자, 세대주, 요양기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3조제1항·제2항, 제94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의견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30	60	100
3)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법 제119조제3항	500	500	500

되는 법인에 알리지 않은 경우				
4)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법 제 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4항제4호	30	60	100
5) 법 제105조를 위반하여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제4항제5호	30	60	100